

1. 개정 이유

안전관리대상인 “전선 및 전원코드”, “전기기기용 스위치” 및 “전기용품 보호용 부품” 등에 대한 관리범위 명확화 및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관련 규정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(안 [별표 3], 안 [별표 4])

- 안전인증 대상인 “전선 및 전원코드”, “전기기기용 스위치” 및 “전기용품 보호용 부품” 등에 대해,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위 명확화

나.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(일부 또는 전부) 규정 보완(안 [별지 4호], 안 [별지 14호], 안 [별지 18호])

- 안전인증 신청서 서식에 KS인증 보유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, KS인증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이 면제됨을 안내문구로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21-584호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1호 분류 가목의 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란 다음에 분류 가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

별표 3 제1호나목의 품목란 비고 중 “기계·기구”를 “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분류 마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.

별표 4 제1호나목의 품목란 비고 중 “)”를 “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, 제14호서식, 제18호서식,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안전인증대상제품(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	1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분류</th><th>품목</th></tr> <tr> <td rowspan="2">가. 전선 및 전원코드</td><td>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</td></tr> <tr> <td><신설>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</td><td>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</td></tr> <tr> <td>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(중략)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</td><td>1) 퓨즈 2) 차단기</td></tr> <tr> <td><신설></td></tr> </table>	분류	품목	가. 전선 및 전원코드	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	<신설>	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	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	(중략)		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1) 퓨즈 2) 차단기	<신설>	<table border="1"> <tr> <th>분류</th><th>품목</th></tr> <tr> <td rowspan="2">가. 전선 및 전원코드</td><td>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</td></tr> <tr> <td>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</td><td>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</td></tr> <tr> <td>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(중략)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</td><td>1) 퓨즈 2) 차단기</td></tr> <tr> <td>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.</td></tr> </table>	분류	품목	가. 전선 및 전원코드	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	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	(중략)		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1) 퓨즈 2) 차단기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.
분류	품목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(중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1) 퓨즈 2) 차단기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류	품목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(중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1) 퓨즈 2) 차단기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표 4]

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
1.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	1.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분류</th><th>품목</th></tr> <tr> <td>가. 전선 및 전원코드</td><td>대상 없음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</td><td>전기기기용 제어소자</td></tr> <tr> <td>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</td></tr> </table>	분류	품목	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	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전기기기용 제어소자	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	<table border="1"> <tr> <th>분류</th><th>품목</th></tr> <tr> <td>가. 전선 및 전원코드</td><td>대상 없음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</td><td>전기기기용 제어소자</td></tr> <tr> <td>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</td></tr> </table>	분류	품목	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	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전기기기용 제어소자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
분류	품목														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														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전기기기용 제어소자														
	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		
분류	품목														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														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전기기기용 제어소자														
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		

안전인증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5일
제 조 업 자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수 입 업 자 (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을 경우)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대 리 인 (외국 제조업자의 대리인)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안 전 인 증 대 상 제 품	제 품 명	수량 또는 크기	
	기본모델명	제품정격(전기용품에 한정한다)	
	파생모델명(필요시 별지 사용)	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(생활용품에 한정한다)	
신 청 모 델 KS인 증 보 유 어 부	미보유()	* 미보유시 안전인증 필요	
	보유()	KS인증번호	* (전기용품) 안전인증 전체면제 (생활용품)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전안법)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, 제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6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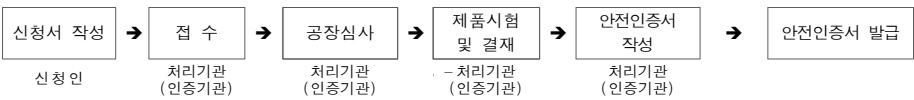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안전인증기관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(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)	수수료
	2.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)	
	3. 제품설명서	
	4.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(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)	
	5.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(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급속에 한정한다)	
	6.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(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	
	7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	
	8. 시험결과서(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	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종질지(80g/㎡)]

안전확인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 고 인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제 조 업 자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안 전 확 인 대 상 제 품	제 품 명		
	기본모델명	제품정격(전기용품에 한정한다)	
	파생모델명(필요시 별지 사용)	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(생활용품에 한정한다)	
신 청 모 델 KS인 증 보 유 어 부	미보유()	* 미보유시 안전확인신고 필요	
	보유()	KS인증번호	* (전기용품) 안전확인신고 전체면제 (생활용품) 제품시험 면제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, 제28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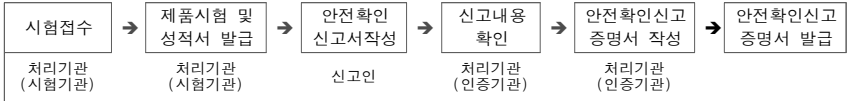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안전인증기관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(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)	수수료
	2.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	
	3. 제품설명서	
	4.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(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)	
	5.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[별표 4 제2호다목3)의 경우에 한정한다]	
	6.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	
	7.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(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	
	8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	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종질지(80g/㎡)]

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
(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검용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신고인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제조사	회사명(국가)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	제조사명	제품명	
	기본모델명	정격	
	파생모델명(필요시 별지사용)	적용안전기준	
신청모델	미보유()	* 미보유시 공급자적합성확인·신고 필요	
KS인증 보유여부	보유()	KS인증번호	* (전기용품) 공급자적합성확인·신고 면제 (생활용품)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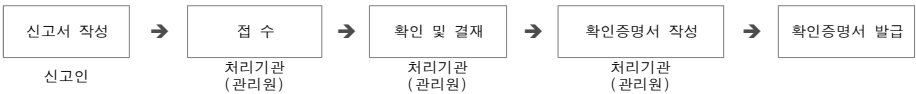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(첨부서류는 제외함)	수수료
		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
※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.

처 리 절 차



발급번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 안전인증대상제품(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 1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<table><tr><th>분류</th><th>품목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가. 전선 및 전원코드</td><td>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</td></tr><tr><td><신설>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</td><td>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</td></tr><tr><td>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(중략)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</td><td>1) 퓨즈 2) 차단기</td></tr><tr><td><신설></td></tr></table>	분류	품목	가. 전선 및 전원코드	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	<신설>	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	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	(중략)		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1) 퓨즈 2) 차단기	<신설>	[별표 3] 안전인증대상제품(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 1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<table><tr><th>분류</th><th>품목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가. 전선 및 전원코드</td><td>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</td></tr><tr><td>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</td><td>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</td></tr><tr><td>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(중략)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</td><td>1) 퓨즈 2) 차단기</td></tr><tr><td>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.</td></tr></table>	분류	품목	가. 전선 및 전원코드	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	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	(중략)		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1) 퓨즈 2) 차단기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.
분류	품목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(중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1) 퓨즈 2) 차단기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류	품목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1) 스위치 2)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)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(중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1) 퓨즈 2) 차단기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4] 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 1.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<table><tr><th>분류</th><th>품목</th></tr><tr><td>가. 전선 및 전원코드</td><td>대상 없음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</td><td>전기기기용 제어소자</td></tr><tr><td>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</td></tr></table>	분류	품목	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	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전기기기용 제어소자	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	[별표 4] 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 1.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<table><tr><th>분류</th><th>품목</th></tr><tr><td>가. 전선 및 전원코드</td><td>대상 없음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</td><td>전기기기용 제어소자</td></tr><tr><td>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</td></tr></table>	분류	품목	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	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전기기기용 제어소자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
분류	품목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전기기기용 제어소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류	품목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전기기기용 제어소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고)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
안전인증신청서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, 제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6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.

안전확인신고서

年	月	日
2014	12	15

안전인증신청서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안전법), 제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, 제9조제3항

안전확인신고서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, 제28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격파인을 신고합니다.

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

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합니다.

년 월 일

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

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책임영양정보를 합니다.